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0.

발 의 자 : 성일종·김석기·이헌승
나경원·최수진·김미애
송석준·고동진·구자근
임종득·유용원·안철수
최형두·강명구·김용태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·보호구역,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·경관적·학술적·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·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,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.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

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공원의 생태·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
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3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
국가해양생태공원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3(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 이격거리)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를 설치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 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 리를 적용할 수 없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3(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 이격거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 호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에 해당하는 경우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